

#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통합발주 사유서

## □ 용역명

- 건설폐기물 처리용역(청사시설현대화 공사)

## □ 통합 발주 사유

- 환경부는 폐아스콘 및 폐합성수지를 별도 발주토록 권장하고 있으나,
- 본 사업은 폐기물 발생지역의 도로 포장형식이 대부분 콘크리트+아스팔트덧씌우기 형태로 있으며 폐합성수지 분리선별 불가능한 실정임.
- 상기한 사유로 다수 공사구간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, 폐합성수지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형태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, 또한 분리 발주시 한정된 인력으로 복수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.

⇒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(환경부 예규 제659호(2019.8.19. 일부개정))

## II.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

### 1.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

#### 【해설】

14. 특히,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, 콘크리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·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금번 건설폐기물 발주는 현장여건 및 현장관리 등을 고려할 때 통합 발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국립민속국악원

